



북합지구 총재협의회

북합지구 총재협의회는 북합지구의 운영 기구이며, 아래에 정의 된 바, 북합지구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국제헌장 및 국제이사회 방침의 적용을 받는다

국제헌장 및 부칙

국제헌장 및 부칙 제8조에 명시된 지구조직: 총재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총재협의회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정지구 총재는 북합지구의 총재협의회를 구성한다. 북합지구 총재협의회는 협의회장으로 활동할 현 또는 전지구총재를 1명 포함시킬 수 있다. 단, 북합지구헌장 및 부칙에 임의로 1명 혹은 그 이상의 직전총재를 포함시킬 수 있으나 협의회장을 포함한 전지구총재 수가 지구총재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협의회장을 포함한 총재협의회의 각 구성원은 협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1표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 북합지구 총재협의회는 국제협회의 현 또는 전회장, 부회장, 현 또는 전이사를 투표권 없는 고문으로 참가 시킬 수 있다. 북합지구 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협의회장은 그 임직을 수임할 때 현 또는 전지구총재 이어야 한다. 협의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그 직책을 재임할 수 없다.

북합지구 총재협의회의 권한

본 헌장 및 부칙의 규정과 국제이사회의 방침에 따라 각 북합지구 총재협의회는 북합지구의 업무를 관리하고 임원을 선임하고 회의를 개최하며 자금을 관리하고 지출을 승인하며 각 북합지구 헌장에 명시된 기타 행정적인 권한을 가진다.

표준 북합지구 헌장 및 부칙 제6조에 명시된 **총재협의회의 책임**:

- (a) 총재협의회의 모든 임원 및 대리인 및 북합지구 및 북합지구대회의 모든 위원회를 관할.
- (b) 북합지구의 재산, 업무 및 기금을 관리.
- (c) 북합지구 대회 및 북합지구 내의 모든 회의를 통제하고 관리.

(d) 국제이사회가 정한 방침 및 절차에 관하여 북합지구 내의 정지구, 지구, 라이온스클럽 또는 회원 등이 제출한 헌장, 개정에 관한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처리. 이러한 총재협의회는 결정은 모두 국제이사회의 검토와 재결을 받아야 함.

(e) 북합지구 예산에 관한 모든 사항 및 북합지구 및 북합지구 대회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 어느 회계연도에도 예산의 불균형이나 결손을 초래하게 될 채무를 만들어서는 아니 됨.

표준 북합지구 헌장 및 부칙 제2조에 명시된 북합지구 **총재협의회**의 추가 책임:

북합지구 총재협의회는:

(a) 북합지구 대회와 관련된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 지불을 승인.

(b) 북합지구 기금을 예치할 은행을 지정.

(c) 북합지구 사무 겸 재무총장의 보증금액을 정하고 보증 채권을 발급하는 보증회사를 승인.

(d) 북합지구 사무 겸 재무총장으로부터 재정보고서(연 2 회 혹은 그 이상)를 접수하고 필요할 경우 연도 말에 회계장부 및 구좌에 대한 감사를 실시.

총재협의회의 임원

북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협의회장, 부의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및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임원을 포함한 총재협회 임원을 명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임원들은 총재협회에 의해 매년 선출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협의회장은 북합지구대회에서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북합지구 협의회의장

선택한 협의회장은 의장직에 수임할 때 현 또는 전총재이어야 하고 협의회가 최근 지구총재로 재직하였으며 북합지구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의회장은 북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다른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 한, 협의회장의 임기 중의 북합지구 총재협회 회의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이 회의는 북합지구대회 개최 후 개최되어야 하며 늦어도 국제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개최되어야 한다.

표준 북합지구 부칙 제3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북합지구 협의회의장. 북합지구 협의회장은 북합지구의 관리운영 조력자이다. 모든 행위는 총재협회의 권한, 지시 및 감독을 조건으로 한다.
총재협회와 협력하여 협의회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a) 본 협회의 목적 추진.

(b) 국제 및 북합지구 방침, 프로그램,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조력.

- (c) 총재협의회가 수립한 북합지구의 목표 및 장기계획을 문서화하여 사용가능하게 함.
- (d) 회의를 개최하고 총재협의회 회의에서 토론을 촉진.
- (e) 북합지구 연차대회의 운영을 촉진.
- (f) 지구총재 간의 화목 및 단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이사회 또는 총재협의회의 노력을 지원.
- (g) 보고서 제출 및 북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
- (h) 북합지구 총재협의회에 의해 부여된 기타의 관리운영 임무를 수행.
- (i) 임기 만료 시 북합지구 재정장부, 기금 및 제반 서류를 후임자에게 적시에 인계.

북합지구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 협의회의장의 감독 하에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은:

- (a) 모든 협의회의회의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각 회의 후 10일 이내 협의회 구성원 전원과 국제본부에 제출.
- (b) 총재협의회가 북합지구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좌하고 본 헌장과 부칙에 규정에 명시되었거나 암시적인 협의회가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
- (c) 본 헌장상의 사무 또는 재무총장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회비를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며 협의회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해 두고 협의회의 지도, 감독 하에 자신이 서명하고 협의회의장이나 기타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협의회구성원이 배서한 수표에 의하여 지출.
- (d) 정확한 회계장부 및 모든 북합지구회의 회의록을 작성, 협의회 구성원이나 북합지구 내의 모든 클럽(적법하게 위임 받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목적으로 적당한 시간에 편람 할 수 있도록 제시.
- (e) 충실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협의회가 요구하는 지정액의 보증금을 예치.
- (f) 임기를 마치면 적시에 클럽의 제반 기록을 후임자에게 인계.
- (g) 협의회 사무총장과 협의회 재무총장직을 따로 설치할 경우 그 직책의 본질에 따라 정하는 임무를 각기 수행.

협의회의장 해임

2014 년 국제대회의 대의원에 의해 승인된 국제헌장의 개정으로 인해, 총재 협의회는 협의회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제헌장 및 부칙 제8조 지구 조직 6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해임. 총재협회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북합지구 의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총재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북합지구 의장의 선출 방법과 관계없이,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 총재협의회 전구성원의 2/3의 찬성표를 얻으면 북합지구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

추가정보

위원회 임명, 북합지구대회 절차, 북합지구 분쟁해결 절차 및 추천 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는 표준 북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총재협의회가 북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관련 개정 절차에 따라 북합지구 헌장 및 부칙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북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표준 북합지구 헌장 및 부칙이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